
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(안 제8조제2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누락된 부칙의 시행일을 규정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